「학칙」 신구조문대비표

2011. 3. 1. 개정 판 (시행 2011. 3. 1.) →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06. 3. 1.)

바뀜 51 · 신설 0 · 삭제 12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94/compare?from=718&to=717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6:15:22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교육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교육 .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교육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심오한 학문 연구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온 세계에 평화를 구현하는 최선의 봉사를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신체와 지성과 영성의 균형 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교육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교육 .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 교육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심오한 학문 연구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온 세계에 평화를 구현하는 최선의 봉사를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제) ① 우리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02-23〉 ②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제2조(편제)** ①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우리 대학교에 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③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제2조의2(학생의 정원) ① 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01-26〉 ② 모집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02-23〉	<삭 제>
제2조의3(계약학과 등) [본조 신설: 2009.8.19]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로	**제3조(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①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을 초과할 수 없다. ②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 행	개 정 안
한다.〈신설 2008-01-28〉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약학과외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년	
제4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②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제4조(학년,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 ②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다.
제6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01-26〉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6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 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시휴업일) 입학전형, 졸업식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 이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임시휴업일)** 입학전형, 졸업식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 이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 수에도 불구 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02-13〉 ① 총장 직속기관 1. 인성교육원(글로벌리더십 교육센터) 2. 사회봉사단 ②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삭제 〈개정 2008-01-28〉 12. 유치원 〈개정 2006-01-26〉 13. 기록관 〈신설 2008-01-28〉	**제8조(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1) 대학교회 (2) 중앙도서관 (3) 정보전산원 (4) 사회교육원 (5). 국제문화교육원 (6) 생활교육관 (7) 예언의신연구원 (8) 박물관 (9) 출판부 (10) 건강증진센터 (11) 서비스센터 (12) 유치원 2. 제1항의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과 전.편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과 전.편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 자격)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4-02-13〉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0조(입학 자격)**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인이거나 동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은 제3, 4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07-02-23〉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삼육의명대학과의 통폐합(2006년 3월 1일 부)으로 인해 삼육의명대학생들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06.1.26]	**제11조(편입학 자격)** ①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②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삼육의명대학과의 통폐합(2006년 3월 1일 부)으로 인해 삼육의명대학생들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전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학기 등록 전에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02-13〉 제3절 절차	**제12조(전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학기 등록 전에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절 절차
제13조(입학지원 서류)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준하는 성적) 3.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 2항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제13조(입학지원 서류)**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내신성적(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준하는 성적) 3.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 2항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현 행	개 정 안
수 있으며, 편입학 지원자는 제1, 2항의 서류 대신 전적대학의 학적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수 있으며, 편입학 지원자는 제1, 2항의 서류 대신 전적대학의 학적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4. 면접고사 성적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①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위원회는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1. 고등학교 내신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4. 면접고사 성적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학 및 편입학 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되, 통합으로 인해 특례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6-01-26〉	**제15조(입학 및 편입학 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되, 통합으로 인해 특례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의 재학생 및 제적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7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은 직권에 의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은 직권에 의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휴학 기간)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02-06〉	**제18조(휴학 기간)**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2년 또는 재학 중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20조의2(유급대상)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04.12.13] 〈개정 2008-01-28〉 1.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에 한함)	**제20조의2(유급대상)**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간 1.2학기 평점이 1.85 미만인 자(약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약학과에 한함)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4.12.13]	**제20조의3(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기초의약과학과 17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01-26〉	**제20조의4(재이수 범위)**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7(18)학점으로 제한한다.
제20조의5(유급절차)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04.12.13]	**제20조의5(유급절차)**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21조(퇴학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삭제 2007-02-23〉	**제21조(퇴학 및 제적)** 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성적이 부진한 자 7. 수업 및 채플, 안식일 등의 결석이 무상한 자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① 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 7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01-26〉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제적자의 재입학)** ①총장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1, 2, 6, 7호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개선된 모습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②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사안에 따른 소정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교과목의 분류)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제24조(교과목의 분류)** ①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교양과목은 국제화교육, 보건복지교육,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02-13〉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③교양과목은 국제화교육, 보건복지교육,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④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한다.
제27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01-07〉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가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7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수과목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 외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그 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②(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가호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군 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7]	<삭 제>
제34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0학점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졸업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은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01-28〉	**제34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1학점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졸업충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은 달리 할 수 있다.
제35조(부전공) ① 재학 중 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5조(부전공)** ①재학 중 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제1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복수전공)** ①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제1전공 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석사 연계과정) [본조신설: 2003.1.10]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석사 연계과정)** ①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1-26〉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0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158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80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20학점 이상)	**제38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건축학과 176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수료 인정 학점 학년 수료 인정 학점 제1학년 34학점 이상 제4학년 13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
제40조(단일전공과정 학점) 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인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01-26〉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40조(전공심화과정 학점)** ①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재학 중 계열기초과목을 제외하고 전공교과목을 57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전공심화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③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본조신설: 2003.1.10]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06-08〉	**제42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중 9학점까지는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학부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대학원에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다.
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6-03-15〉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제43조(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인문사회대학

현 행	개 정 안
신학과	신학과
신학사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재무회계 전공
영어영문학 전공	경영학사
문학사	영어영문학 전공
경영학과	문학사
경영학사	유통마케팅 전공
영어커뮤니케이션 전공	경영학사
문학사	영미언어문화 전공
경영정보학과	문학사
경영학사	경영정보 전공
중국어과	경영학사
문학사	중국어 전공
유아교육과	문학사
문학사	유아교육과
일본어과	문학사
문학사	일본어 전공
보건복지대학	문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생활체육학과	문학사
이학사	생활체육학과
보건관리학 전공	이학사
보건학사	보건정보학 전공
간호학과	보건학사
간호학사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사
문학사	상담학과
물리치료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사	약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사
이학사	식품영양학과
약학대학	이학사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사	물리치료학사
기초의약과학과	과학기술대학
이학사	컴퓨터시스템 전공
과학기술대학	공학사
컴퓨터시스템 전공	동물자원학 전공
공학사	농학사
동물자원학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
농학사	공학사
소프트웨어 전공	동물생명공학 전공
공학사	농학사
동물생명공학 전공	응용컴퓨팅 전공
농학사	공학사
응용컴퓨팅 전공	원예학 전공
공학사	농학사

현 행	개 정 안
원예학과 농학사 화학과 이학사 환경그린디자인학과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학과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화학과 이학사 환경원예디자인 전공 이학사 생명과학과 이학사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공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미술컨텐츠 전공 미술학사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미술학사 음악학 전공 음악학사
제43조의2(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외국대학에서 2년을 수학하고 삼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68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양 대학교가 각각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5.24]	<삭 제>
제44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 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02-23〉	**제44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 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있는 모든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목회를 지원할 수 없고, 의약학부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제45조(졸업) ①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약학과 158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정 2006-01-26〉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1-26〉	**제45조(졸업)** ①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단수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과정 포함) 중에서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②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5학점(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준을 받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졸업요건 학점이 다를 수도 있다. ③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학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6조(학생회)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제46조(학생회)** ①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부장(서기),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남.여생활관장,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②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③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 교목실장, 학생지원부장, 여학생부장, 교무부장, 남.여생활관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제49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기타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49조(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기타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50조(학생활동의 규제)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를 포함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0조(학생활동의 규제)** ①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를 포함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1조(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2-13〉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51조(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53조(징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개정 2004-02-13〉	**제53조(징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4.2.13]	**제55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제56조(징계처분) 〈개정 2004-02-13〉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제56조(징계처분)** ①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현 행	개 정 안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그리스도인의 행동규범에 위배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58조(포상) 〈삭제〉〈개정 2006-01-26〉	**제58조** 삭제
제61조(총장 및 처장) ①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교수 중 1인을 부총장으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교수 중 1인을 교목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신앙과 교육이념 구현문제를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 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 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⑥ 교수 중 1인을 기획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⑦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⑧ 교수 중 1인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여 대외협력 관계를 총괄하게 한다. ⑨ 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61조(총장 및 처장)** ①교수 중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62조(교수회)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2조(교수회)**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등록금의 징수시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1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①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제73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①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현 행	개 정 안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75조(특별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제75조(특별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제78조(공개강좌의 허가 등)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공개강좌의 허가 등)**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장학금) ①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79조(장학금)** ①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80조(학교기업)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시설: 2005.6.10]	**제80조(학교기업)** ①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험.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②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③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2.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④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81조(대학평의원회) 이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인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삭 제>
제82조(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3조(자체평가) [본조시설: 2009.5.4]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4조(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⑦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시설: 2011.2.25]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시설: 2011.2.25]	<삭 제>
제86조(학칙개정안 공고) 학 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한다. [본조시설: 2011.4.13]	<삭 제>
제87조(학칙개정 및 공포)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본조시설: 2011.4.13]	<삭 제>
제88조(보고)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본조시설: 2011.4.13]	<삭 제>